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8
----------	-------

발의연월일 : 2018. 9. 11.

발의자 : 황영철 · 김진태 · 홍철호

박성중 · 김용태 · 박덕흠

권성동 · 이종명 · 김기선

이철규 · 경대수 · 이양수

정태옥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제13조 제8항”을 “제13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 제6항”을 “제13조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u></p> <p><u>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u></p>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 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 제7항 ----- 제8항 -----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u>제13조제6항</u> 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u>제13조제7항</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